

1999. 2.

제83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천)

순 서

- ☐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
- ☐ 광주광역시서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의결안 ----- 5
- ☐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12
- ☐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안 사 유

-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실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방세제 혜택 및 자동차세 감면 규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측면에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 요 골 자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의2)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의 자동차의 경우 면허세를 면제함.

□ 참 고 사 항

- 구세감면조례 표준안 : 세정 13415-1552('98. 11. 17)

□ 검 토 의 건

- 장애인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은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의 감면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제2조의2신설은 장애인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과 복지증진을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는 시책으로 생각됨.
- 개정조례안 제2조의2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1대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 혜택을 줌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바람직한 안이라 생각되므로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하겠음.